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프로메가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에이동 1013호	
판매업 대표전화	1588-3718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비소화합물 Dimethylarsinic acid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식별번호 (CAS No.)	75-60-5
	용도	Laboratory chemicals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따라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에서 취급할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설치할 것
	화학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녹는 수용성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 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취급할 것 - 흡입, 섭취 및 피부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보관 ·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 스파크, 화염, 고열, 가연성 물질, 금속으로부터 격리 보관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어두운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저장할 것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할 것 -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 할 것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시 유해화학물질 라벨 부착 할 것 - 운송 시 가연성 물질과 같이 포장하지 말 것 - 운반·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용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고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p>[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p>